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2020년 12월



개요

- 2020년 11월 5일 베트남 정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 관리를 규정하는 제20/2017/ND-CP호 시행령("제20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제132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제132호 시행령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법인소득세 ("CIT")부터 적용됩니다(즉, 2020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을 의미함). 제 132호 시행령 발효일부터 제20호 시행령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 관리를 규정한 제68/2020/ND-CP호 시행령 ("제68호 시행령")은 만료됩니다.
- 제132호 시행령은 제20호 시행령을 유지하고 그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며 제68호 시행령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132호 시행령은 정상가격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가능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의 광범위한 적용을 승인하며, CbCR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공 및 이전가격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베트남을 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뉴스에서 Deloitte Vietnam은 제132호 시행령의 주요 조항 및 변경 사항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제132호 시행령의 내용

- 제132호 시행령은 04개 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 제1장 : 일반 규정 - 5개 조항 (제1조에서 제5조까지)
 - 제2장 : 비교 가능성 분석, 독립적인 비교 대상 선정 및 이전가격 방식 - 10개 조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제3장 : 세금 계산을 위한 비용 확정 및 신고 - 4개 조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제4장 : 실행 조항 - 4개 조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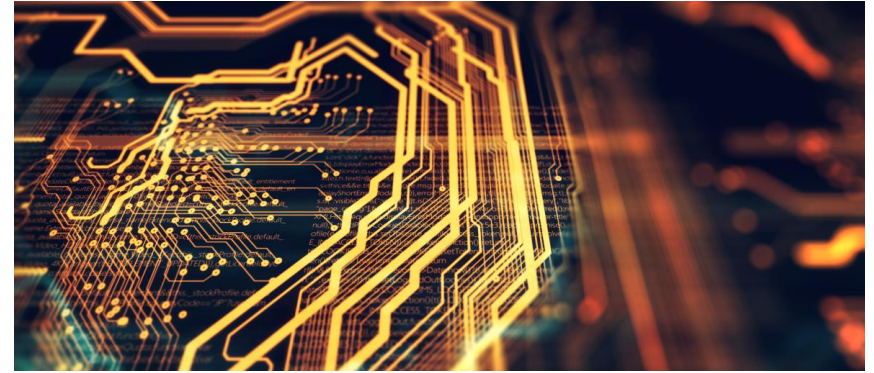
2020년 12월



1. 적용 대상 확대

제 20 호 시행령 제 2 조는 **적용 대상**을 “법인세를 신고 방식(Declaration method)으로 납부하고 특수관계자와 영업 활동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이하 납세자)”로 정의하였다.

제 132 호 시행령의 제 2 조는 “**신고 방식(Declaration Method)**” 문구를 생략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신고 방식(Declaration Method)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예: 외국인 계약자 등)의 경우에도 제 132 호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수관계자 유형 보완

제 132 호 제 5 조, 2 항 - 특수관계자 유형 규정

제 132 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자 유형 “1”를 추가하였다.

“1) 과세기간내에 기업 자본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출자 자본을 양도하거나 양도 받는 기업 ; 과세기간내 거래 발생 시점에 기업 운영자 혹은 관리자 또는 본 조항의 g에 규정된 사례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과 소유주 출자 자본의 최소 10%를 차입하거나 대출하는 기업”

이에 따라 제 20 호 시행령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신고 해야 할 수 있다.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2020년 12월

3. 정상 가격 범위 하위값 조정

제132호 시행령 제4조는 “정상 가격 범위”를 백분위 35번째부터 75번째까지의 값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정상 가격 범위 하위값이 백분위 25 번째 값(제20호 시행령 규정)에서 백분위 35 번째 값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132호 시행령은 2020년 법인소득세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정상가격 범위가 조정되므로 기업은 정상 가격 범위 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전가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여러 산업 부문이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정상 가격 범위 축소는 많은 기업에게 2020년 이전가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법인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

제132호 시행령의 제22조 및 제16조 3항은 제68호 시행령의 법인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유지한다 (2017-2018 회계연도 소급 적용 및 한도초과 이자비용의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포함).

따라서 제132호 시행령이 발효에 따라 제68호 시행령이 만료되더라도 이 규정은 제132호 시행령에서 계속 유지된다.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2020년 12월



5. 이전가격 문서 면제 사례 명확화

이전가격 문서 작성 및 신고 면제에 관하여 제132호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라 납세자는 **부록 I, 항목 IV, 항목 III**에 대한 신고 및 이전가격 **문서 작성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i) 특수관계자가 베트남에서 CIT 납부 대상이며 (ii) 납세자와 동일한 CIT 세율을 부담하고 (iii) 양측 거래 당사자 모두 해당 과세기간에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은 향후 많은 납세자들의 이전 가격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국가별 보고서 ("CbCR")에 대한 상세 지침

제132호 (제18조, 5항)는 납세자의 CbCR 관련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다. 예를들면 :

- **납세자가 베트남에 설립된 최상위 지배회사 (global ultimate parent "GUP")**로써 전세계적으로 연결 매출액이 VND 18조 이상인 경우 납세자는 CbCR(제132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V 양식에 따름)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납세자의 GUP가 해외에 설립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CbcR을 작성하는 경우**, 베트남 세무 당국은 국제 조세 협약에 따라 자동 정보 교환 ("AEOI")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가 베트남 세무 당국에 의무적으로 Cbc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32호 시행령의 CbcR 제출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특정한 경우에 대한 다양한 조항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GUP 경우에 따른 CbcR 제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132호 제20조 1c항에서 명시적으로 CbcR(국가별 보고서)가 **세금 조정이 아닌**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교환 목적으로 사용 된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2020년 12월

주목할 만한 변경

7. 이전가격 문서 제출 기한

제132호 시행령에 따른 이전가격 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세무 감사/조사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감사 법령에 따름**
- **세무 조사/감사 전 협의인 경우:** 세무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받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세무 조사/감사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제132호 시행령 규정에서는 세무 조사/감사 시 이전가격 문서 제출 기한이 제20호 시행령 규정(세무 당국의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비해 단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제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8. 세금 조정 및 비교가능성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

“**상업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가 **이전가격 관리 및 신고시 비교가능성 분석 및 비교대상 회사 선정에 사용되는**” 검증된 데이터 베이스로 명확해 졌다(제132호 시행령 제17조, 1a 항). 따라서 납세자의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 적용 및 이의 승인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제 132호 시행령에서 상당 부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전가격 확정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상가격 결정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제38/2019/QH14호 조세 관리 법령에 규정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세금을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무 당국의 내부 데이터 베이스나 상업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다.

제 20/2017/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에 관한 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

2020년 12월

주목할 만한 변경

9. 독립적인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또는 특수성을 가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비교 분석 범위 확대 명확화

제132호 시행령 (제9조 , 2항)에서는 독립적인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또는 특수성을 가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비교 분석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해야 한다.

- 동일한 지역 또는 국내 시장에서 납세자가 영업중인 분야와 가장 유사한 경제 부문에서 독립적인 비교대상을 선택한다.
- 유사한 산업 환경 및 경제 발전 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하도록 비교 영역을 확장한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